



2004년 3월 설립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정치적 중립의 원칙 아래 공정하게 주관·진행함으로써 토론에 의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며, 또한 선거방송 토론 제도연구 및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함께하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주토론문화의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로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후보자 토론회는 영향력이 가장 큰 선거운동 방식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정책 중심의 선거방송토론'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유권자의 효과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해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스탠딩 토론 및 후보자 상호 정책검증 토론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전국고등학생·대학생토론대회와 유권자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토론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 토론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토론문화의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해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사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201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결실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담았습니다.

아무췌록 이 자료가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 제도 및 토론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제1장 일반현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10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10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4. 사무기구 설치 등	14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14

제2장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후보자토론회 관리기반 구축	18
2. 후보자토론회 관리	22
3. 후보자토론회 진행	25

제3장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1.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용역	30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	31
3.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31
4. 국민모니터단 운영	33

제4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36
2.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홍보	38



제5장 정책토론회 관리

-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40
- 2.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42

제6장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 1.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56
- 2.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57
- 3. 토론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64
- 4.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65
- 5. 토크라마와 영화로 바라본 제19대 대선과 대한민국 선거사 콘텐츠 제작 ... 66
- 6. 타기관·단체 등 토론문화사업 지원 66

제7장 제도개선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70
- 2.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개정 71
- 3.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 72

제8장 부록

- 1. 201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74
- 2. 2017 토론회 토론진행표 77
- 3.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84

2017 연례보고서 표목차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10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11
[표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개요	12
[표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명단	12
[표 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13
[표 1-6]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15
[표 2-1]	위원회의 개최 현황	19
[표 2-2]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22
[표 2-3]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현황.....	23
[표 2-4]	토론주제 선정 현황	24
[표 4-1]	2017. 4. 19.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현황.....	36
[표 4-2]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홍보 현황	38
[표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40
[표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41
[표 5-3]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43
[표 5-4]	초청정당의 참석승낙서 제출 현황	44
[표 5-5]	위원회의 등 개최 현황.....	44
[표 5-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질문요지.....	45
[표 5-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46
[표 5-8]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49
[표 5-9]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49
[표 5-10]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50
[표 5-11]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질문요지	50



[표 5-12]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51
[표 5-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53
[표 6-1]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개요	56
[표 6-2]	토론대회 토론 논제	59
[표 6-3]	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대회 개최 현황.....	59
[표 6-4]	토론대회 진행방식	60
[표 6-5]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61
[표 6-6]	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63
[표 6-7]	토론전문가 기초과정 시간표	64
[표 6-8]	토론문화사업 지원 현황	67
[표 7-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현황	71
[표 7-2]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 개정 사항	71
[표 7-3]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72



2017 연례보고서 사진목차



[사진 3-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31
[사진 3-2]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33
[사진 4-1]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토론회	37
[사진 4-2]	괴산군수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37
[사진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42
[사진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수어통역	42
[사진 6-1]	유권자대토론회	57
[사진 6-2]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과 MOU 체결	58
[사진 6-3]	토론멘토링 프로그램	58
[사진 6-4]	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대회(대구, 인천, 울산)	59
[사진 6-5]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61
[사진 6-6]	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결승전	61
[사진 6-7]	토론대회 수상자	64
[사진 6-8]	토론대회 시상식	64
[사진 6-9]	교육기부 프로그램	65
[사진 6-10]	토론체험 및 토론멘토링 프로그램	65





일반현황

제1장 일반현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한 대담·토론회, 같은 법 제82조의3에 의한 정책토론회 및 「정당법」 제39조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설치하는 상설기구임.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됨.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단위 : 개)

일자	근거	현 황			
		계	중앙	시·도	구·시·군
2004. 3. 1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	—	—
2004. 3. 15.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	1	—	—
2004. 3. 29. 까지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16) 및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 창설	198	1	16	181

일자	근거	현황			
		계	중앙	시·도	구·시·군
2008. 3. 21.	• 천안시 분구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 증설(↑2) : 천안시서북구·천안시동남구위원회 ※ 폐지(↓1) : 천안시위원회	199	1	16	182
2008. 5. 30.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 ※ 증설(↑67) : 국회의원선거구위원회가 아닌 구·시·군위원회 단위 설치	266	1	16	249
2010. 7.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49개→251개) ※ 증설(↑5) :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위원회 ※ 폐지(↓3) : 창원시·마산시·진해시위원회	268	1	16	251
2012. 7. 1.	•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폐지	268	1	17	250
2014. 7.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50개→251개) ※ 증설(↑4) :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위원회 ※ 폐지(↓3) :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위원회	269	1	17	251
2016. 7. 4.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칭변경 ※ 부천시원미구→부천시갑, 부천시소사구→부천시을 부천시오정구→부천시병	269	1	17	251
2017. 1.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51개→249개) ※ 증설(1) : 부천시위원회 ※ 폐지(3) : 부천시갑·부천시을·부천시병위원회	267	1	17	249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2017. 12. 31 현재)

구분	위원회수	지역별																
계	267	-																
중앙	1	-																
시·도	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49	25	16	8	10	5	5	5	-	42	18	14	16	15	22	24	22	2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표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개요

구분	정수	선정대상	임기	위원장		근거규정
				선출방법	직무대행	
중앙	11명 이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3년 (연임가능)	호 선	상임위원	법§8의7②· ③, 규칙§6
시·도	9명 이내	-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3년 (연임가능)	호 선	연장자순 ※ 정당추천 위원 제외	법§8의7②· ③, 규칙§7
구·시·군	9명 이내	-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함) -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 언론인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3년(연임가능) ※ 겸직위원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 추천 위원)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겸함	연장자순 ※ 정당추천 위원 제외	법§8의7②· ③, 규칙§7

[표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명단

(2017. 12. 31 현재)

직위	성명	직업	추천기관
위원장	최은수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규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성한용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오미영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기원	방송인	MBC
	김진수	방송인	KBS
	강신업	변호사	법조계
	정병운	교 수	국민의당
	안상윤	언론인	자유한국당
	권영준	교 수	시민단체
	서정건	교 수	학계

2) 위원회 신분과 권한 및 의무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으로 함.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으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음.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이 위원회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해당 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위원회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있어 투표권은 있으나,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Casting Vote)은 인정되지 않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방송 또는 선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표 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2017. 12. 31. 현재, 위촉일순)

성 명	경 력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배	JTBC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신창운	덕성여대 사회학과 강의초빙교수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장석인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익상	서일대학교 영상방송예술과 교수
장혜영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태양식	SBS 뉴스제작3부 보도중계 팀장

4. 사무기구 설치 등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장·간사 및 서기를 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리 사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정한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함.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함. 공영방송사 등이 중계방송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은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

[표 1-6]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주관	종류	선거별	개최시기	횟수	근거법률
중앙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	연중 (단,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시·도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구·시·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2)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음.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에는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3) 민주시민 토론문화 활성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새내기유권자 및 미래 유권자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을 위해 매년 대학생토론대회 및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토론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각종 토론대회 및 학교임원선거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선거방송토론 운영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TV토론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의 진행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유관 학회, 기관·단체들과 교류·협력, 법·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후원, 전문 기관·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2장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후보자토론회 관리기반 구축

1) 관리체제 구축

(1)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운영

- 기간 : 2017. 2. 1. ~ 선거일까지
-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존 2팀(방송토론팀·토론지원팀)체제에서 대외협력TF팀을 추가 편성하여 3팀 체제로 개편하고,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구성

(2) 전문위원회의 운영

- 기간 : 토론회 종료시까지
- 운영 : 2회

차수	개최일시	회의 내용
1차	3. 28.(화) 16:00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2차	4. 11.(화) 16:00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

(3)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 기간 : 2017. 3. 13. ~ 후보자토론회 종료 시까지
- 구성 : 5명(남택용, 오미영, 허익범, 김진수, 송기원)
- 개최 횟수 : 6회

- 전체 위원회의 개최 전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토론주제, 질문 사항 등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
- 각 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시에는 토론회의 사회자가 함께 참석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

(4) 위원회의 운영

- 개최 횟수 : 13회

[표 2-1] 위원회의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시	처리안건 등
1차	1. 11.(수) 10:00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토론회 관리대책 검토 -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 방안 검토 - 대선 예상시기별 토론회 개최안 등 검토
2차	2. 16.(목) 09:30	• 위원회의 방청실 설비방안 검토 • 대선 후보자 토론회 개최 관련 검토 - 후보자 토론회 의제·진행방식 - 토론회 국민참여 방안
3차	3. 13.(월) 10:30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한 검토
4차	3. 17.(금) 16:00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안
5차	3. 31.(금) 09:00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관련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 개최 결과
6차	4. 7.(금) 09:00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7차	4. 14.(금) 09:00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관련 검토
8차	4. 17.(월) 09:00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후보자 등 선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추가 결정안
9차	4. 21.(금) 16:00	•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 정책검증토론 시 정책발표용 모니터 사용에 관한 검토
10차	4. 23.(일) 18:30	•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사항 선정안
11차	4. 24.(월) 21:30	• 향후 후보자토론회 진행 관련 검토
12차	4. 30.(일) 16:00	•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안
13차	5. 2.(화) 18:30	• 제19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사항 선정안

-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을 위해 방청실 및 대기실 설비 등 준비

2)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7. 3. 8.(수) 11:30~13:30
- 참 석 자 : 위원회 4명, KBS 4명, MBC 4명
- 주요내용
 -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편성 시간대 등
 - － 후보자토론회 : 일정,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확대 방안, 토론회 제작 방향, 관리 방안

(2)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

구분	개최일자	대상	주요내용
방송제작 실무회의	2017. 3. 27.	KBS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 관련 • 토론회장 및 부대시설 설비/방송사 출입 및 안전관리
방송제작 실무회의 (합동)	2017. 4. 10.	KBS MBC	• 스탠딩 연단 등 토론회장 설비 관련 세부내용 •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현황 요청 • 국민인터뷰 활용, 방송화면 구성, 수중계 방안 등

(3) 안전관리 관계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대상
2017. 4. 11.(화) 11:00	KBS(여의도)	중앙토론위원회, 서울시선관위, KBS,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보안업체 등
2017. 4. 11.(화) 14:30	MBC(상암)	중앙토론위원회, 서울시선관위, MBC,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보안업체 등

3)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자토론회 환경 조성

(1)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국민 친화적 개편

-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서버 클라우드 적용
 - － 홈페이지 서비스 이관 및 운영 안정화 : 2017. 3. 13.부터
 - － 토론회 개최 기간에 홈페이지 이용자가 급격하게 집중될 것을 예상하여 장애 상황에 신속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운영서버로 성능을 개선
- 모바일용 다시보기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연동
 - － 성능 안정성 강화 및 각종 관련 자료 탑재

(2) 공식 페이스북 개설

- 운영기간 : 2017. 3. 12. ~ 5. 17.
-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2017debate>
- 운영현황

콘텐츠	방문자	조회	좋아요
36건	10,013명	114,088회	2,741회

(3) 국민질문 공개모집 및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 국민질문 공모 개요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서울역·용산역	울산시
기간	'17. 3. 22.(수) ~ 4. 16.(일)	'17. 3. 22.(수) ~ 4. 23.(일)	'17. 3. 22.(수) ~ 4. 27.(목)	'17. 4. 14.(금) ~ 16.(일)	'17. 4. 8.(토)
방법	이메일			현장 작성	현장 작성 후 우편발송

- 국민질문 공모 결과

구분	계	온라인	오프라인
공모건수(건)	8,396	7,280	1,116
공모자수(명)	4,591	3,965	626

- 국민인터뷰 제작 현황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용
4. 14.(금) 10:00~20:00	서울역 대합실 2층 매표소 앞 (에스컬레이터 부근)	1,500여명	영상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매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도입영상으로 활용
4. 15.(토) 10:00~17:00			
4. 16.(일) 10:00~17:00	용산역 대합실 여행센터 앞		

(4)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및 시청 인증샷 행사

- 다시보기 서비스 개요
 - 운영기간 : 2017. 4. 24.(월) ~ 5. 10.(수)

- 운영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용 웹 운영
 - ※ 포털사이트(NAVER)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도 함께 운영
- 운영내용
 - 홈페이지 다시보기 웹 활용 및 모바일용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운영
 -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멘트(시나리오) 활용 및 중계방송사 스포츠자막을 통해 서비스 홍보 실시
- 다시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총 접속자 현황)

구분	합계	1차	2차	3차	초청외
접속자수(명)	14,434	5,371	4,856	3,388	819
비율(%)	100	37.2	33.6	23.5	5.7

2. 후보자토론회 관리

1) 개최일시 등 결정

- 재외투표기간(4. 25.~4. 30.), 사전투표일(5. 4.~5. 5.)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 토론회 개최일을 제4차 위원회의(3. 17.)에서 결정

[표 2-2]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토론분야
1차	4. 23.(일) 20:00 ~ 22:00	KBS TS-4스튜디오	정치
2차	4. 28.(금) 20:00 ~ 22:00	MBC C스튜디오	경제
3차	5. 2.(화) 20:00 ~ 22:00	MBC C스튜디오	사회
초청외	4. 24.(월) 23:00~25.(화) 01:00	KBS TS-4스튜디오	국정 전반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기간(3. 18.~4. 16.)에 대상 언론기관(방송사업자 6개사,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사 128개사)에서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70건을 수집·분석하였으나,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이상을 충족하여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추가된 후보자는 없었음.

[표 2-3]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현황

구분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 후보자)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국민의당	안철수
	4	바른정당	유승민
	5	정의당	심상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6	새누리당	조원진
	7	경제애국당	오영국
	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9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10	민중연합당	김선동
	11	통일한국당	남재준
	12	한국국민당	이경희
	14	홍익당	윤홍식
	15	무소속	김민찬

※ 토론회 개최 전(2017. 4. 21.) 후보 사퇴 :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3) 사회자 선정

- 제6차 위원회의(4. 7. 금)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들의 추천 명단과 준비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 후 출석위원 11명 전원 동의로 선정

구분	1차	2차	3차	초청외
사회자	김진석 (KBS 기자)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백운기 (KBS 앵커)

4) 토론주제 검토 · 선정

- 기관·단체, 전문위원, 국민질문 공모 등을 토대로 의제를 수집하고, 의제선정을 위한 토론 의제 개발 연구용역(3. 10.~4. 10.) 보고서, 국민여론조사(4. 6.~4. 7.)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제7차 위원회의(4. 14.)에서 토론주제를 선정

[표 2-4] 토론주제 선정 현황

구분	토론주제	토론논점
초청 1차	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미·중·일 외교정책 - 통일, 북핵 등 대북정책
	2.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	-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 선거제도, 개헌
초청 2차	각 후보자의 주요 경제정책	
초청 3차	1. 복지·교육 정책	<복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약자(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재원 등), 연금·보험, 의료·환경 등 <교육> 공교육 정상화 방안, 사교육 문제, 학제개편 등
	2. 국민통합 방안	국민과의 소통, 인사편중, 사회갈등 해소, 국가 미래비전 등
초청외	1. 정치·외교 분야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 등
	2. 경제·사회 분야	경제 활성화, 복지·교육 정책 등

5) 질문사항 검토·선정

- 사회자 공통질문은 사회자가 참여한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 토론회 개최 2일전에 비공개로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정
- 국민질문은 토론회 개최 1시간 전에 중계주관방송사에 마련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모니터실에서 소집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선정하고 봉인하여 방송 직전에 사회자와 제작진에게 전달

6) 진행방식 결정

- 「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30일까지 진행방식을 결정·공표해야 하는 바, 전(前) 위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당내 경선 후보자토론회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조하고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6차 위원회의(4. 7.)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방식을 결정
- 역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고정적이었던 ‘기조연설’을 생략하고, 5명의 후보자 구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시간총량제에 의한 자유토론 방식을 결정하고, ‘경제분야’가 단독으로 다루어진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이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는 ‘후보자 상호간 정책검증 토론’(후보자 모두발언 후 1:1 자유토론) 방식을 활용하기로 결정
- ‘초청외’의 경우, ‘초청’과 동일하게 시간총량제에 의한 자유토론방식을 활용하였고, 후보자 10명

중 1명의 후보자가 토론회 개최 전에 사퇴한 관계로, 9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10분 총량의 발언시간 및 맺음말 1분씩 배정

7) 개최 공보·홍보 등

-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총 7회 사전에 제공하고, 토론회 진행 중에도 보도용 사진을 이메일로 언론사에 송부하여 사후에도 보도되도록 한 결과,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총 266회 보도
- 중앙지 5회, 인터넷신문사 2회 등 총 7회의 인터뷰 실시하고, 대학생 기자단 취재 지원을 통해 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에 총 2회 게시
- 중앙선관위 선거특집 페이지에 ‘후보자토론회’ 링크 메뉴 개설, 중앙토론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토론회 개최일정 안내 및 다시보기 서비스 배너 게시하고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이벤트 실시(234명 참가)
-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이벤트 4회, 카드뉴스 12회, 정보제공 6회, 일반정보 14회 등 총 36회 게재 실시

3. 후보자토론회 진행

1) 토론회장 설비

- 사회자와 후보자가 마주앉는 구조로 설계하고, 수어통역 세트는 스튜디오 내에 별도로 설비. 스탠딩토론으로 결정된 초청 1·3차에서는 연단을 사용하고, 연단은 참고자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판의 넓이와 자료 수납 등을 고려하여 제작
- 원형판 LED에는 선거슬로건(“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토론위 슬로건(“열린토론 바른 선택”), 정당명 그리고 후보자 사진이외에 다양한 문자(“국민질문”, 주제 등)를 표출
- 후보자와 사회자의 물컵, 세트바닥의 LED 원형판, 스튜디오 천정 및 별도의 구조물 등에 위원회 슬로건과 선거 슬로건을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인지도 제고
- 초청 토론회의 경우 개최 당일 17시부터 20분간 세트를 공개하여 각 후보자 측에서 좌석 및 연단 등 설비를 점검하였으나 변경 요구는 없었음.

2) 토론회 진행 준비

-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 등의 상황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미약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개입 시점과 범위를 사회자에게 구체적으로 수차례 안내하였으며, 자유토론은 주장과 재반론이 가능한 방식으로, 후보자간 질문·답변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사회자가 리허설에서 강조하여 안내하도록 함.
-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자막 및 수어 방송 실시.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수어통역사 확대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등의 요구가 있어, 수어통역사 화면크기의 확대, 후보자별 자막색상 구분 등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

3)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 토론회 종료 직후(22:00), 주제와 무관한 상호공방 및 과도한 네거티브로 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의 취지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상황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관한 추가논의를 하였고, 초청 2차(4. 28.) 및 초청 3차(5. 2.) 토론회에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책중심의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후보자 측에 발송함(4. 25.).
- 주제2(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는 개헌, 검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 정치개혁, 선거 제도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후보자별로 잔여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4)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 초청 후보자토론회와 달리 후보자별 발언시간 총량에 포함된 '기조연설'이 있었음.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 이내로 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일부 후보자는 기조연설을 3~4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자유토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 상호간에 질문·답변을 하거나 일방적인 자기 발언으로만 시간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음.

5)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진 초청 2차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경제정책 및 공약을 중심으로 '성장 vs. 분배', '기업 투자 및 규제', '4차 산업혁명', '복지 및 증세', '일자리 공약'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 특히, 특정 후보자와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일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하여(초청 1차 토론회) 초청 2차 토론회를 위한 대비책 등이 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상황에 따른 예시문안을 대본에 추가하여 사회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6)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 위원회 주관 마지막 후보자토론회로서 사회분야에서 학제개편, 단설유치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4대강 사업 등 환경 문제, 강성노조, 여가부 폐지, 사드배치 비용분담 그리고 복지재원 등 사회복지 문제까지 사회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진행
-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토론회 진행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현직 방송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3장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1.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용역

1)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 2017. 4. 12.(수) 14:00 위원회의실에서 평가위원 6명(사무국장 등)이 제안서 3건(한국정치학회, 미디어전략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평가하고 한국정치학회로 선정
- 제안서 보완 요구 : 조사비용이 대부분이므로 패널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과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현실적·효과적 측면 등 품질 평가 위주로 연구방향 설정

2) 효과 분석 연구용역 진행

-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5명의 한국정치학회 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다각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진행방식 등), “인식적 측면”(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및 유권자의 인지도, 관심도 등), “효과적 측면”(심리·인지효과, 태도효과, 참여효과, 선택효과 등)의 3가지 분석 영역으로 나누어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
-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를 활용한 ‘컴퓨터 이용 전화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CATI)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보정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6월 22일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의 중간결과를 방송토론팀장이 요약하여 보고하고, 효과 분석 결과와 토론회 진행방식 및 사회자 역할, 토론회 개최 시간 등 후보자토론회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음. 또한, 후보자토론회 관리 규정 개정 필요사항,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및 향후 개선사항 논의 등 토론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음.



[사진 3-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3.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1) 일시 · 장소 등

- 일시 : 2017. 7. 12.(수) 15:00~18: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
- 주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국언론학회

2) 진행순서

(1) 제1부

- 제1주제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이상철-성균관대 교수)
- 사회자 : 양승목(서울대 교수)
- 토론자 : 박용찬(MBC 논설위원실장), 오미영(중앙토론위 위원/가천대 교수), 유경한(한국외대 교수), 이영음(방통대 교수), 이주현(중앙토론위 사무국장)

(2) 제2부

- 제2주제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이소영-대구대 교수)
- 사회자 : 양승목(서울대 교수)
- 토론자 : 김신동(한림대 교수),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조화순(연세대 교수), 최영돈(중앙토론위 방송토론팀장), 허익범(중앙토론위 위원)

3) 개최 결과

-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라 실시된 조기선거이며,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였던 만큼 후보자토론회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일반 유권자 등 총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 공동 주최측인 언론학회와 협의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선거일이 두 달여 지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사회자·발제자·토론자 선정에 있어 학계, 언론계, 토론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포지엄을 진행
-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선거방송뿐만 아니라 국회방송에서도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대규모 제작팀이 참여하는 등 전국방송에서 뉴스와 TV프로그램으로 영상화 되어 중앙토론위와 심포지엄의 위상을 제고



[사진 3-2]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4. 국민모니터단 운영

1) 운영 개요

- 기간 : 2017. 4. 23.(일) ~ 5. 9.(화)
- 대상 : 1·2·3차 초청 후보자토론회
- 구성 : 총 252명의 지원자 중 서류심사 및 전화인터뷰를 거쳐 최종 49명(남성 26명, 여성 23명)
- 방법 : ‘TV토론 모니터링 매뉴얼’ 등 자료 송부 및 안내, 토론회 시청 후 이메일을 통한 평가서 (소감문 등)·설문지 접수

2) 활동 결과

- 제출 소감문 총 49편
- 우수 소감문 작성자 5명에게 기념품 발송



2017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연예심
4

재 ·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4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4월 12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서 전국적으로 51곳에서 실시되었고, 이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국회의원선거 1곳, 기초자치단체장선거 3곳에서 개최되었음. 다만, 5월 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되어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1.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TV토론주간(2017. 3. 30.~4. 6.)에 총 7회의 후보자토론회 및 연설회를 모두 개최하였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청대상에 포함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4회, 초청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1회, 연설회를 2회 개최하였음.

[표 4-1] 2017. 4. 19.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현황

시·도	선거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국회의원 재선거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4. 5.(수) 09:45 ~ 11:00	4. 5.(수) 09:45 ~ 11:00	안동MBC 대구MBC	이호영 (기자)	김영태(민) 김재원(한) 김진욱(바)	
		초청외	연설	안동MBC 스튜디오	4. 4.(화) 14:00 ~ 15:00	4. 5.(수) 11:00 ~ 11:40	안동MBC 대구MBC	이호영 (기자)	류승구(코) 배익기(무) 박완철(무) 성윤환(무)	

시·도	선거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기	하남시장 보궐선거	초청	토론	하남시청 대회의실	4. 5.(수) 15:30 ~16:44	4. 6.(목) 20:00 ~21:14	(주)딜라이브경동 케이블방송	정용석 (방송인)	오수봉(민) 윤재균(한) 유형욱(국) 윤완채(바)	
	포천시장 보궐선거	초청	토론	포천 반월아트홀 소극장	4. 4.(화) 10:00 ~10:50	4. 6.(목) 20:00 ~ 20:50	(주)씨제이헬로비 전나라방송 (주)딜라이브우리 케이블티브이	이지훈 (방송인)	김종천(한) 정종근(바)	최호열(민)
		초청외	토론	포천 반월아트홀 소극장	4. 4.(화) 12:30 ~13:20	4. 6.(목) 20:50 ~ 21:40	(주)씨제이헬로비 전나라방송 (주)딜라이브우리 케이블티브이	이지훈 (방송인)	유병권(민중) 박윤국(무)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	초청	토론	KBS청주 공개홀	4. 3.(월) 14:00 ~15:30	4. 3.(월) 14:00 ~15:30	KBS청주	이해수 (청주KBS 아나운서)	남무현(민) 송인현(한) 김춘목(무)	
		초청외	연설	KBS청주 공개홀	4. 3.(월) 10:00 ~12:00	4. 3.(월) 15:30 ~16:00	KBS청주	이해수 (청주KBS 아나운서)	박경옥(행) 김환동(무) 나용천(무)	

주) 정당명 약칭 : 더불어민주당(민), 자유한국당(한), 국민의당(국), 정의당(정), 바른정당(바), 민중연합당(민중), 국민행복당(행), 무소속(무)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는 모든 선거구에서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실시하였고, 후보자토론회 및 연설회는 지상파방송사(4회), 종합유선방송사(3회)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시간대(9:00~12:00) 2회, 오후시간대(12:00~18:00)가 2회, 저녁시간대(18:00~22:00) 3회 방송되었음.



[사진 4-1] 상주시구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토론회



[사진 4-2] 괴산군수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는 복지(4건), 경제 현안(3건), 교육(3건), 지방자치 현안(2건) 등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진행방식은 기초연설이후 사회자 공통질문(1회), 주도권토론형(4회)로 진행하였음.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모든 토론회와 연설회에서 이루어지고(7회),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국회의원재선거와 괴산군수보궐선거의 토론회, 연설회에서는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이 동시에 실시되었음(4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는 도 및 시·군토론위원회에서 참고할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언론기관의 지지율조사 공표사항 수집”, “후보자TV토론주간 지정·운영”,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완벽한 후보자TV토론 관리를 위해 지원하였음. 특히, 재·보궐선거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후보자토론회 준비 및 관리를 지원하고,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파악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

2.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홍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사실을 자막광고 342회, 현수막 25개소 게시, 잡지·신문광고 8회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였음.

[표 4-2]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홍보 현황

(단위 : 건)

계	현수막	자막광고	잡지·신문 등 광고	기타
414	25	342	8	39

또한,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면서 배너를 만들어 게시하는 등 유권자의 시청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정책토론회 관리

제5장 정책토론회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해에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근거하여 공직선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3. 10.)의 다음달(4. 1.)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4. 14.)까지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이에 따라 2017년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준비기간, 각 정당의 당내경선 일정, 선대본부 구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1회만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4월 10일 오전 10시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표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2017. 4. 10.(월) 10:00~12:00(120분)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중계주관방송사	KBS
중계방송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NEC-TV 중계
토론자 (정당명, 주요직책)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선대위 수석대변인) 김종석(자유한국당 전 여의도연구원장, 선대위 경제산업제1본부장) 김성식(국민의당 수권비전위원회 위원장, 선대위 전략본부장) 김세연(바른정당 사무총장, 선대위 본부장) 이정미(정의당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사회자	백운기(KBS 앵커)
토론주제	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2. 경제활성화
진행방식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 맺음말

토론의제를 수집하기 위해 참석대상 정당 및 시민단체·학회로부터 토론주제를 추천받고, 국회 출입기자 등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를 토대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과 ‘경제활성화’, 2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음. 토론회의의 진행방식은 모든 토론자에게 동일한 시간(각 18분)을 부여하고 토론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간총량제를 활용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결정하였음. 또한 1회만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국정운영 방안 등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5개 정당의 입장을 알릴 수 있도록 ‘기조연설’ 형식을 활용하였음.

[표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국정운영 방안 등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입장】 • A/B/C/D/E 토론자(각 2분 정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주제 1〉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토론자 답변 후 C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8분 정도) : 토론자는 1회 발언(질문·답변 등)시 가급적 2분 이내로 함. 사회자는 토론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논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입장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가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이하 동일).	91분 (토론자당 18분)
	〈주제 2〉 경제활성화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D/E/A/B/C 토론자 답변 후 E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각 8분 정도)	
	• A/B/C/D/E 토론자(각 1분) ※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 조정	
맺음말		5분
계		96분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간 제약 등으로 1회만 개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당의 정견·정책 중심의 토론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었음.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동시 생중계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대통령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계주관방송사의 사정으로 시청이 용이한 황금시간대 방송편성이 되지 못했고, AGB(닐슨코리아) 조사 결과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3.5%(KBS1 2.0, MBC 0.7, SBS 0.8)의 시청률을 나타냈음. 청각장애 시청자를 위해 수어 및 자막 방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열린토론 바른선택” 등의 슬로건을 활용하여 토론회장을 설비하는 등 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임을 유권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진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사진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수어통역

2.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개최하게 되어 있음.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의 선거일이 상반기(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던 정당정책토론회를 하반기에 2회 개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초청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개최시기를 9월과 11월로 사전 안내(6월 15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 파업 등을 이유로 초청대상 7개 정당 중 6개 정당이 불참하여 토론회 개최가 무산되었음. 제19차 위원회의(9월 27일)에서 무산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정당법에 따른 의무 개최 횟수에 산입하기로 결정하여, 정당정책토론회는 1회만 개최하여도 무방하나,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내에 2회의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불참 사유인 공영방송사 노조 파업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 제작진, 스튜디오 상황과 각 정당의 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음. 2017년 11월 14일 MBC노조 파업 종료로 계기로 토론회 개최 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사전에 정당 실무책임자와 핫라인 구축, 정당 실무협의회 개최, 공영방송사와의 상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바탕이 되어 2회의 법정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

[표 5-3]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개최일시	2017. 9. 27.(수) 10:00~12:00(120분)	2017. 12. 11(월) 10:00~12:00(120분)	2017. 12. 12(화) 10:00~12:00(120분)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여의도)	MBC A 스튜디오(상암)	MBC A 스튜디오(상암)
초청 정당 (토론자)	7개 정당	7개 정당 (최고위원 등)	7개 정당 (정책위의장 등)
토론분야	외교·안보, 복지	정치·외교·안보 분야	경제·사회·복지 분야
사회자	백 운 기(KBS 앵커)	성 경 섭(건국대 초빙교수)	오 미 영(가천대 교수)
중계방송	개최 무산	MBC, KBS, 국회방송 생중계 (한국선거방송 녹화중계)	MBC, KBS, 국회방송 생중계 (한국선거방송 녹화중계)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1) 개최 준비

-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연초에 정당정책토론회의 개최시기는 상·하반기 1회씩으로 계획하고 공영방송사에 안내 하였으나, 공영방송사관계자 업무협의회(7. 19.)에서 9월(1차), 11월(2차)에 개최 예정임을 수정 안내하고 토론자가 6명 이상이 예상되므로 토론회장 설비 등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8월중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1부와 협의를 통하여 9월 27일(수) 오전 10시 KBS 여의도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제15차 위원회의(8. 30.)에서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결정하고, 참석대상 정당 등에게 통지하였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BS, KTV국민방송, 국회방송에 토론회 중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국회방송만 녹화중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토론자 선정
 - 하반기에 정당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전당대회, 여름휴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에서 개최시기를 9월과 11월로 결정(6. 1.)하고, 당시 초청대상 5개 정당에 안내하면서 적극 협조 요청하였음.
 - 개최일시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와 향후 업무 추진을 위해 우선 8월 30일 기준으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초청

정당으로 선정하였음. 이후 9월 4일에 새민중정당(의석 2석), 대한애국당(의석 1석)이 등록됨에 따라 초청정당을 7개 정당으로 재선정하고, 각 당에 결정사항 통지 및 참석승낙서 등 제출을 안내하였음.

[표 5-4] 초청정당의 참석승낙서 제출 현황

정당명	승낙한 참석자	비고(제출일 등)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김세연	9. 12.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 변희재	9. 19.
새민중정당	당대표 김종훈	9. 19.
자유한국당	당대변인 강효상	9. 20.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태규	9. 21.
더불어민주당		미제출
정의당		미제출

• 위원회의 등 운영

- 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는 정책토론회 의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음. 특히, 2개 정당(정의당, 새민중정당)의 토론회 개최 연기 요청 및 6개 정당의 불참에 따른 무산과 관련해 긴급 위원회의를 2회 소집하여 논의하였음.
- 준비소위원회는 토론주제·진행방식, 사회자, 질문사항의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남택용, 허익범,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표 5-5] 위원회의 등 개최 현황

구분	일시	내용
제14차 위원회의	6. 1. 17:00	• 개최시기 검토
제15차 위원회의	8. 30. 10:00	•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제17호)
전문위원회의	9. 7. 14:00	• 주제·진행방식 검토
준비소위원회의	9. 13. 09:30	• 주제·진행방식 검토, 사회자 검토
제16차 위원회의	9. 15. 09:30	• 주제·진행방식 결정(18호) • 사회자 선정(제19호)
준비소위원회의	9. 19. 17:30	• 질문사항 검토
제17차 위원회의	9. 20. 09:30	• 질문사항 선정(제20호)

구분	일시	내용
제18차 위원회의	9. 25. 08:00	•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안(제21호) • 토론회 참석 정당 수에 따른 진행방식 결정안(제22호)
제19차 위원회의	9. 27. 08:00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무산에 따른 개최 횟수 산입 여부 결정안(제23호) ⇒ '정당들의 불참에 의해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불가에 따른 횟수 산입 여부 결정안'으로 변경

• 사회자 선정

- 사회자는 위원 9인의 추천을 받아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천수가 높은 2인을 전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KBS 백운기 앵커로 선정하였음. 사회자에게 미리 '진행 매뉴얼'을 제공·안내하고, 토론회 대본 작성 시 사회자로부터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 등을 제출받는 등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자연스러운 토론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 토론주제 선정

- 정당, 기관·단체, 전문위원 등을 토대로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 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하였음.
- 제19대 대선 이후 개최하는 첫 정당정책토론회인 점을 감안하여 주제 검토시 이슈였던 외교·안보와 복지 분야에서 주제를 정하기로 하고 세부 주제를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선정하였음. 주제의 범위가 명확하고 진행방식이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부 논점은 제시하지 않았음.
- 질문사항은 사회자안과 사무국안을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논의하고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음.

[표 5-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질문요지

구분	분야	주제	질문요지
주제1	외교·안보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주제2	복지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진행방식 결정

- 기초연설은 생략하고, 토론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을 활용하고, 토론자의 발언시간(총 13분) 내에서 주제별 발언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시간총량제 방식'을 이용하여 토론자 자유토론 방식, 맷음말 순으로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주제별 토론시간 편중화 방지 차원에서 시간총량제로 진행하되 각 주제별 토론 시간은 5:5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음.

[표 5-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용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시간총량제)	주제1 :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	92분 (토론자당 총 13분)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F/G 토론자 답변 후 A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토론자당 약 6분 30초) : 토론자는 가급적 1회 발언시 2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질문·답변 등)함. 사회자는 토론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논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입장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가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이하 동일).	
	주제2 :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F/G/A 토론자 답변 후 B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토론자당 약 6분 30초) : 위와 동일	
맷음말	• C/D/E/F/G/A/B 토론자 맷음말(각 1분)	7분
계		99분

※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맷음말 조정(총 방송시간 : 120분)

- 설명회 개최

- 2017년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청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였음.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회에 불참하여 토론팀장이 대리추첨하였고, 설명회 전까지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의당과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토론자가 결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였음.

- 토론회장 설비

- 토론회장은 사회자와 토론자가 마주보는 구조로 설비하는 것으로 하여 중계주관방송사측 세트제작업체 등과 협의하여 제작하였고, 토론자 분장실 및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 사용과 토론회 당일 출입에 관해 중계주관방송사와 협의하였음.

(2) 토론회 추진 및 무산

• 정당의 연기 요청

- 새민중정당, 정의당 2개 정당에서 정당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사의 동시 노조 파업(9. 4.)을 이유로 정당정책토론회를 파업 종료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통지한 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체없이 관련 정당에 결정사항 통지 및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음.

• 정당의 불참 통보

- 설명회(9. 21.)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이 설명회 다음 날 불가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토론회 불가 통지 공문을 보내 옴. 여당의 불참에 따라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참석 승낙한 국회의원 3명이 “민주당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 보이콧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참을 통보해 왔으며, 연기를 요청했던 새민중정당, 정의당도 불참을 통보해 왔음.

• 토론회 무산

- 2개 정당의 연기 요청 처리를 위한 긴급 위원회의(9. 25.)에서 ‘토론회 참석 정당 수에 다른 진행방식 결정안’을 검토하여, 1개 정당 참석의 경우에는 대담 형식으로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 결정(2016. 11. 8., 제17차 위원회의)을 재확인하였으며, 초청정당 중 2개 정당만 참석하더라도 정당정책토론회를 정상 개최할 수 있도록 ‘참석 정당 수에 따른 진행방식안’을 검토·결정하였음. 개최일 전일 18:00경 6개 정당의 불참을 확인하고, 다음 날 08:00 긴급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정당들의 불참에 의해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불가에 따른 횡수 산입 여부 결정안’을 검토하여, 정당의 불참에 의해 정당정책토론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 개최 횡수에 산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결정의 이유로는 첫째, 무산의 귀책사유가 정당에 있으므로 토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둘째, 의무 개최 횡수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매번 정당의 참석 여부에 따라 개최 횡수가 결정될 것이므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시하였음. 그리고 연내에 추가로 2회의 토론회를 개최를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후속 조치

- 중앙토론위원회는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무산에 따른 위원회 입장에 대한 브리핑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였음. 그리고 토론회 무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스튜디오 세트는 향후 제2차 또는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를 KBS에서 개최할 경우 재사용을 위하여 KBS에 연말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중계주관방송사 및 제작업체 등과 협의하였음.

2)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공영방송사인 MBC 시사제작국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방문 및 협의를 통하여 제2차 및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를 12월 11일(월),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상암동 MBC A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이후 제20차 위원회의(11. 21.)에서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음. SBS, 국회방송에 토론회 중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국회방송만 동시 생중계에 참여하고, 한국선거방송은 녹화중계하였음.

(2) 토론자 선정

정당별 맞춤형 소통체계 확보를 통한 협조체계 강화 목적으로 초청대상 7개 정당 실무책임자를 방문·면담하여 토론회 관련 의견수렴 및 정당과 위원회간 핫라인을 구축하였음. 제1차 토론회의 무산 상황과 제2·3차 토론회의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의견 교환 등 정당과 위원회간 소통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7년 정당 실무협의회’를 2017년 11월 3일(금) 개최하였으며, 바른정당 외에 6개 정당 실무책임자가 모두 참석하였음.

또한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에 영향력이 큰 주요 정당의 입장·의견 수렴 및 참석 독려를 목적으로 위원장과 교섭단체 구성 4개 정당 정책 위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음. 국민의당·바른정당 2개 정당만 성사되었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담당자와 정당 실무책임자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준비기간이 짧았던 2회의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협업의 토대가 되었음.

MBC 노조 파업 종료일로부터 제2·3차 토론회 개최일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 선정 등 정당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안내하기 위하여 11월 23일(목) 정당 실무책임자 방문·면담을 실시하였음. 2회의 토론회 준비 관계상 토론자 참석승낙서를 11월 30일(목)까지 조기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음.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설명회 참석 후 제3차 토론회 토론자를 주제에 적합한 의원으로 변경하여 12월 8일(금) 제출하였음.

[표 5-8]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정당	제2차		제3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익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정유섭
국민의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의장	이용호
바른정당	최고위원	하태경	정책위의장	김세연
정의당	평화본부장	김종대	정책위의장	김용신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정책위의장	정태홍
대한애국당	대표최고위원	조원진	대표최고위원	조원진

(3) 위원회의 등 진행

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는 정책토론회 의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의 3회, 준비소위원회의 2회, 전문위원회의 1회 개최하였음.

[표 5-9]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기간	구성위원	직무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2017. 11. 22.~12. 12.)	남택웅,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 서정건	• 토론주제(안) 검토 • 진행방식(안) 검토 • 질문사항(안) 검토 • 사회자 검토

(4)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위원 9인의 추천을 받아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천수가 높은 2인을 전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제2차 토론회는 성경섭 건국대 초빙교수(전 위원), 제3차 토론회는 오미영 가천대 교수(현 위원)로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였음. 사회자가 준비소위원회의 (12. 7.)에 참석하여 사회자 공통질문 문안을 검토하였고, 자유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토론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현직 위원이 사회자로 선정되어 효율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토론진행을 유도하였음.

[표 5-10]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구분	토론분야	성명	직업
제2차	정치·외교·안보	성경섭	건국대 초빙교수
제3차	경제·사회·복지	오미영	가천대 교수

(5) 토론주제 선정

다양한 토론의제 수집을 위해 정당, 기관·단체, 전문위원 등에 의제 추천을 의뢰하고, 전문가 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하였음.

토론분야는 정당에서 토론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 연관성이 있도록 제2차 토론회는 정치·외교·안보, 제3차 토론회는 경제·사회·복지 분야로 선정하였고, 7개 정당이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제는 2개로 결정하였음.

제2차 토론회는 제19대 대선 이후 개최하는 첫 정당정책토론회이자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과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선정하였음. 제3차 토론회는 현재 지진, 원전, 강력범죄 등으로 안전문제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사회 안전대책”과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으로 선정하였음.

주제의 범위가 명확하고 진행방식이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부논점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질문사항은 논점별 도입문안에 대한 사회자안과 사무국안을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논의하고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음.

[표 5-11]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질문요지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질문요지
제2차	정치·외교·안보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방안과 향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각 당의 방안
제3차	경제·사회·복지	사회 안전 대책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과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우려 등 사회 안전 대책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	공공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

(6) 진행방식 결정

역동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 주도권 토론 형식 등 다양한 진행방식 검토를 했으나, 참석 정당의 수가 7개 정당이므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결정하였음. 기초연설은 생략하고, 토론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을 활용하고, 토론자의 발언시간(총 13분) 내에서 주제별 발언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시간총량제 방식'을 이용하여 토론자 자유토론 방식, 맷েম말 순으로 결정하였다. 주제별 시간 편중화 방지 차원에서 시간총량제로 진행 하되 각 주제별 토론시간은 5:5로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표 5-12] 제2·3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시간총량제)	<제2차> 주제1 :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 <제3차> 주제1 : 사회 안전 대책	92분 (토론자당 총 13분)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F/G 토론자 답변 후 A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토론자당 약 6분 30초) : 토론자는 가급적 1회 발언시 2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질문·답변 등)함. 사회자는 토론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논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입장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가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이하 동일).	
	<제2차> 주제2 :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 <제3차> 주제2 :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F/G/A 토론자 답변 후 B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토론자당 약 6분 30초) : 위와 동일	
맷েম말	• C/D/E/F/G/A/B 토론자 맷েম말(각 1분)	7분
계		99분

※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맷েম말 조정(총 방송시간 : 120분)

- 참석 토론자수에 따른 총 발언시간 : 7인(총 13분)/6인(총 16분)/5인(총 19분)/4인(총 24분)/3인(총 33분)

(7) 설명회 개최

12월 6일(수) 10:00~11:00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초청정당과 토론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준비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설명회 후에 자유한국당 제3차 토론회의 경우 변경된 토론자 보좌진에게 별도 유선으로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대기실에 방문하여 토론자에게 직접 안내하였음.

(8) 토론회장 설비 등

토론자 7명이 사회자와 사전으로 마주보는 구조로 설비하고 수어통역사 세트는 토론자 좌석과 별도로 배치하며 토론자용, 사회자용, 전체화면용, 수어통역사용 등 카메라 총 7대를 설치하고, 사회자 전용시계(리얼타임) 및 인터럽,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설비하였음.

위원회 주관 토론회임을 알 수 있도록 토론위원회 CI로고와 슬로건을 활용하여 토론자·사회자의 물컵과 세트 중앙 바닥면, 사회자 배경을 제작하고, 동일한 스튜디오 세트 설비를 연이틀 사용함으로써 물컵의 색상 변경을 통해 변화를 주었음.

(9) 토론 진행

• 제2차 토론회

- 일부 토론자가 늦게 도착하여 착석한 상태로 사전 보도사진 촬영을 진행하였고, 리허설 시간을 통해 토론회 진행방식을 사회자가 직접 설명하여 시간운용 등에 혼란이 없도록 주지시켰으며, 사회자가 토론자를 소개할 때에 토론자들이 가볍게 목례하는 것으로 형식을 정리하였음. 자유토론 진행중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하여 쟁점별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대공수사권 이전, 공수처장 임명 등과 관련한 쟁점으로 토론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자가 참고로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원만하게 진행하였음.
- 다만, 토론 진행 중 일부 토론자가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여러 차례 호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자가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기도 하였음.

• 제3차 토론회

- 리허설을 통해 토론 진행방식을 사회자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2차 토론회에서 발생한 대통령 호칭에 관한 문제의 반복이 예상되어 사회자가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토론회인 만큼 주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토론회 진행 중에 또 대통령 호칭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음.
- 자유토론 진행 중 토론자들이 1회 발언시 2~3분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행시간이 여유 있어 맺음말을 당초 1분에서 1분 20초로 늘려 진행을 마무리 하였음. 일부 정당의 토론자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후원문의(전화번호) 판넬을 들고 맺음말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10) 시청률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와 협조하여 11월 22일과 12월 8일 두차례 언론사에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당의 토론회 참석을 촉구하였음. 그러나 공영방송사의 노조파업과 조기에 토론자 확정이 되지 않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통상적인 홍보 외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였음. 토론회 방송시간이 평일 오전시간대이기도 해서 시청률은 비교적 높지 않았음.

[표 5-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구분	전국 기준		
	KBS1	MBC	계
제2차	2.6%	0.6%	3.2%
제3차	2.3%	0.6%	2.9%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제6장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1.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2017년 5월 17일(수)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참여와 소통! 유권자가 말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라는 주제로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를 개최하였음. 기존의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던 유권자대토론회와 달리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선거,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선거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중친화적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을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시켜 흥미와 관심을 높였음.

[표 6-1] 유권자대토론회 개최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부 제》 참여와 소통! 유권자가 말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시	2017. 5. 17.(수) 14:00~16:00
장소	씨네큐브 광화문
출연자	• 진행자 : 오동진(영화평론가) • 토론자 – 김태훈 (대중문화칼럼니스트·방송인, 전 MBN ‘황금알’) –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신은하 (탈북유권자,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 안봉근 (새내기유권자,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1학년) – 이섬숙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주요내용	• 영상상영(10분) : 스윙보트(Swing Vote, 2008) – 토크 : 유권자가 본 제19대 대통령선거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영상상영(5분) :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이렇게 만들어요 - 토크 : 제19대 대통령후보 선거방송토론 평가/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토론문화 제고를 위한 유권자 제언/선거방송토론의 발전 방향 제안 - 영상상영(4분) :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 토크 : 유권자가 바라는 나라·정부/성공적 협치를 위한 유권자 제언/참가자-패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이날 행사에서는 ‘스윙보트(Swing Vote, 2008)’,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이렇게 만들어요’,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등 3편의 영상을 보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TV토론회의 의미와 역할’,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 가치’ 등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권자대토론회를 방송영상으로 제작하여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방영하였음. 또한 유권자들에게 정치과정 참여와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 환기시키고, 선거가 없는 시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영화<스윙보트>로 보는 선거방송토론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음.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SNS에 친숙한 연령층 대상으로 영화를 이용한 맞춤형 홍보에도 활용하였음.



[사진 6-1] 유권자대토론회

2.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민주화 30년, 미래 한국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2017년 처음 실시한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본선)와 동시에 진행하였음. 2017년 8월 3일(목)~4일(금) 양일간 솔브릿지국제

경영대학(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하였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 선거연수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리서치를 비롯하여 MBC·SBS·EBS·KTV·국회방송 등 방송사의 지속적인 후원과 방송기자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후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생수 지원 등 많은 기관과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하였음.

이번 토론대회는 매년 개최해온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예·본선과 최초로 실시한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본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또한 대학생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와 2016년 연구반 운영을 통한 구체적인 개최 방안을 토대로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토론문화의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특히, 개최장소인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대학교 시설·장비를 지원받고, 해당 대학의 전문 강사와 학생들이 고등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전과 같은 토론을 체험할 수 있는 “토론멘토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협업 우수 사례를 정립하였음.



[사진 6-2]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과 MOU 체결



[사진 6-3] 토론멘토링 프로그램

토론대회 토론논제는 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38명 189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논제 검증단(내부 4명, 역대 대회 수상자 5명)의 검증·추천 및 교차 검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선거 1·2과, 정당과, 법제과, 선거연수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의성과 찬·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의 토론논제(대학생 2개, 고등학생 1개)를 선정하였음.

[표 6-2] 토론대회 토론 논제

구분		토론논제
대학생	본선(결 승)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선(준결승)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본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먼저, 토론대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난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 또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의 운영과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음. 원활한 토론대회 진행을 위해 사용한 토론대회관리시스템도 일부 개선하여 효율적인 대학생토론대회의 대회관리(조 편성, 심사위원 배정, 대진표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였으나, 고등학생토론대회는 예산 사정으로 수기의 방법으로 대회를 관리하였음.

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대회는 4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17개 시·도토론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이전부터 시·도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대구·인천·광주 외에 울산·세종·전남 등 3개 시·도토론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토론대회를 실시하여 총 6개 시·도토론위원회에서 자체 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주최 또는 후원의 형태로도 예선대회를 실시하여 시·도별로 2개 팀씩, 총 34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하였음. 다만, 대회 당일 1개 팀이 불참하여 33개팀을 대상으로 32강 결정전을 실시한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6-3] 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대회 개최 현황

계	자체 토론대회 개최	공동주최	후원	동영상 심사
17개 위원회	6개 위원회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4개 위원회



[사진 6-4] 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대회(대구, 인천, 울산)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참가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전국 46개 대학교 120개 팀이 조기에 접수 마감 되었으나, 전년 대비 11개 대학이 감소(경상권 소재 참가자수 대폭 감소)하였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에 따라 접수순위 97순위부터는 대기팀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전에 불참을 통보한 4개 팀이 있어 대기 4개 팀에 참가를 통보하였음. 사전 불참신청기간 이후 2개팀, 대회 당일 5개 팀이 불참하고, 1개 팀이 참가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88개 팀을 대상으로 토론대회를 진행하였음. 예선은 2~3개 팀 씩 조 편성 후 조별리그를 실시하고, 각 조별 2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64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6-4] 토론대회 진행방식

방식	진행시간				비고
	예선	본선 (64강~8강)	결선		
			준결승	결승	
① 찬성팀 기초연설	1분	1분	1분	1분30초	
② 반대팀 기초연설	1분	1분	1분	1분30초	
③ 자유토론(팀당)	6분	8분	10분	12분	반대팀 발언시작
④ 반대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30초	
⑤ 찬성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30초	
합계	16분	20분	24분	30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협조로 교수 심사위원 16명과 토론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 심사위원 32명, 총 48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음. 대회장별로 3명(교수 심사위원 1명, 선거관리위원회 4~5급 1명, 6급이하 1명)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결선은 이호은 청운대 교수(심사위원장), 남택용 중앙토론위 상임위원, 송인암 대전토론위 위원, 고범준 변호사, 김성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교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음.

한편, 4층 대강당 멀티비전을 활용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조별 편성현황과 배정된 대회장, 본선 진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전지역 고등학생 40명을 토론시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진행 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으로 지정하였음.

결승전은 청운대 방송국에 의뢰하여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대회 과정은 스케치 영상으로 제작 하였으며, 제작 영상은 편집 후 한국선거방송TV를 통해 방영하였음.



[사진 6-5]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사진 6-6] 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결승전

개회식은 참가자, 심사위원, 내·외빈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은수 위원장의 개회사,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로즈 학장의 축사, 중앙선거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격려사를 통해 전국고등학생 토론평대회 최초 실시 축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선거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결승전 개최 후 시상식 및 폐회식에는 참가자(수상자 등), 심사위원,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고, 전국고등학생토론평대회 대상 수상팀의 지도교사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상과 부상을 수여하였음.

다만, 전국고등학생토론평대회와 전국대학생토론평대회를 동시 개최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 다수의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요원들의 사전 안내가 부족하여 진행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6-5]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평대회 시상내역

구분	훈격	팀수	팀명	소속 대학명	성 명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1팀	Denken	고려대학교	이청아	이재은
금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1팀	슈퍼햇	성균관대학교	최원석	김사무엘
은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1팀	시나브로	숭실대학교	서혜지	배연재
	우송대학교 총장상	1팀	전율	연세대학교	주해인	노도일
동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4팀	형형색색	성균관대학교	홍형석	이재형
			톡소다	성신여자대학교	김고은	송현지
			예감	경희대학교	한정원	정상우
			공명	서울시립대학교	김수민	류동환

구분	훈격	팀수	팀명	소속 대학명	성 명	
장려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8팀	마지막도전	이화여자대학교	심영현	
			마지막도전	홍익대학교	임종현	
			원해	한동대학교	김도해	남궁재원
			소주	한동대학교	김소중	진주은
			너울	가천대학교	박지나	양선영
			도토리	고려대학교	이상민	박진수
			교묘	송실대학교	김정수	박희원
			세렌디피티	경기대학교	권민혁	이주원
후원사 특별상	대전광역시선관위위원장상	1팀	지진	동국대학교	조성수	
				경북대학교	채원영	
	선거연수위원장상	1팀	코스모스	한양대학교	양재영	정원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상	2팀	루모스	중앙대학교	김영훈	박하영
			우리 우리	대구교육대학교	허수산	
				경북대학교	이효정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상	1팀	허슬디독스	경기대학교	허찬행	이 슬
	한국리서치회장상	1팀	무아	고려대학교	조재성	
				연세대학교	최보미	
	한국교육방송사장상	1팀	난마돌	명지대학교	윤신영	임종원
	한국정책방송원장상	1팀	홍차라떼	고려대학교	홍승환	
				한양대학교	차영철	
	방송기자연합회장상	1팀	강설	한국외국어대학교	설재은	강지현
스피커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상	8명	사고와표현	고려대학교	허정욱	
			블라디미르	성균관대학교	박지훈	
			이감덕	경희대학교	안창원	
			이문동불박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호준	
			당숙어른	성균관대학교	박종인	
			라운우리	연세대학교	이주영	
			겉크러쉬뽀뽀	경기대학교	유 룯	
			지진	경북대학교	채원영	

[표 6-6] 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훈격	팀수	지역명	소속학교명	성명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1팀	인천	인천국제고등학교	서민제	김건우
금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1팀	충북	산남고등학교	지혜진	송지수
은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1팀	울산	약사고등학교	차영제	김관우
	우송대학교 총장상	1팀	충북	세광고등학교	조영석	임승혁
동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4팀	인천	하늘고등학교	곽선진	조성현
			경기	양서고등학교	김경희	박연아
			전남	순천금당고등학교	김인후	신희권
			전북	군산고등학교	이승윤	최준영
장려상		8팀	강원	강릉강일여자고등학교	안효빈	임현진
			경북	문경여자고등학교	김다선	고인경
			경기	동두천고등학교	박정민	유정하
			경북	우석여자고등학교	채은화	성주영
			경남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문선영	이효정
			대구	포산고등학교	유영지	한지수
			서울	계성고등학교	이지현	이의진
			울산	학성고등학교	이세현	최현서
후원사 특별상	대전광역시선관위원장상	1팀	대구	서부고등학교	서연정	한규미
	선거연수위원장상	1팀	세종	세종국제고등학교	신환희	이명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상	1팀	서울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강여원	김채연
	한국리서치회장상	1팀	제주	남녕고등학교	김소운	김예진
	한국교육방송사장상	1팀	대전	대전고등학교	한지원	조규찬
	한국정책방송원장상	1팀	광주	문성고등학교	심준호	장원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	1팀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장예원	장예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1팀	충남	온양고등학교	서혁준	한승권
참가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9팀	광주	서석고등학교	김형준	김성민
			대전	대전여자고등학교	최유라	송현정
			경남	경남외국어고등학교	류호균	신상현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김성진	정찬영
			부산	덕문여자고등학교	김예현	최에서
			전북	부안여자고등학교	강예원	김수현

구분	훈격	팀수	지역명	소속학교명	성명	
참가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상	9팀	세종	세종국제고등학교	김지호	홍가은
			충남	아산고등학교	김인규	이승민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김예진	고영란
스피커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상	2명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김성진	
			전북	부안여자고등학교	강예원	
지도교사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	1명	인천	인천국제고등학교	김영치(교사)	



[사진 6-7] 토론대회 수상자



[사진 6-8] 토론대회 시상식

3. 토론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토론이 차지하는 영역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전문가 양성을 위해 토론전문가 기초과정을 선거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였음. 특히 토론대회 심사방법 강의와 토론 실습을 통해 실전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로 운영하여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은 대학생·고등학생 토론대회 심사위원으로 직접 활동하였음.

[표 6-7] 토론전문가 기초과정 시간표

시간 월일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6. 7. (수)	교육등록 (09:30까지) 및 과정안내	설득의 기술		점심식사	스피치와 토론		토론문화 활성화 추진방향	토론 교육과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의 이해

시간 월일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6. 8. (목)	토론의 유형과 실제			점 심 식 사	자기 주도 학습	토론논제 이해	토론대회의 이해		토론대회의 이해
6. 9. (금)	아카데미 토론				자기 주도 학습	토론 실습			수 료 식

4.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5년부터 미래유권자인 청소년들이 토론체험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17년에는 1월과 8월에 선거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4회에 걸쳐 67명의 중학생들이 참여하였음. 특히, 대학생토론대회의 수상자가 찬성팀과 반대팀의 멘토가 되어 토론의 준비, 주장과 논거의 구성방법 등을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멘토링을 하고, 이에 따라 직접 토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토론체험 및 토론멘토링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통해서도 3회 실시하여 전남지역 중·고등학생 86명이 참석하는 등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사진 6-9] 교육기부 프로그램



[사진 6-10] 토론체험 및 토론멘토링 프로그램

5. 토크라마와 영화로 바라본 제19대 대선과 대한민국 선거사 콘텐츠 제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정치 이슈를 대중 친화적으로 풀어보는 토크 영상 콘텐츠 파일럿 프로그램 2편을 제작하였음. 특히 소통방통 토크라마 '세상을 바꾸는 선거(34분)'는 대중적인 토크(Talk)와 서사가 있는 드라마(Drama)를 결합한 토크라마(Talkrama)로 역동적인 대한민국 현대정치와 대통령선거 등의 역사·문화를 다양한 방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였음. 영화평론가 오동진, 정치평론가 배종찬, 로빈 데이아나가 출연하여 제19대 대선과 미국과 프랑스의 대선과 비교하면서 각 나라의 사회문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선거의 뒷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까만영화 하얀정치(27분)'는 영화를 매개로 정치·선거 이슈와 대통령선거에 대한 시사점을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하였음. 영화평론가 오동진, 정치평론가 배종찬이 진행하고, 문화평론가 김태훈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국내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을 정치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영화 속 이슈를 토크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갔음.

기획·제작업체와 두 차례 시사회를 통하여 당초 기획의도에 부합하는지, 공정성 및 객관성 원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음.

2편의 영상콘텐츠는 2017년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한국선거방송(eTV)을 통해 방송하고, 그 밖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였음. 앞으로도 선거 등 정치 이슈를 대중 친화적으로 풀어보는 영상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한국선거방송(eTV)을 통해 방송할 예정임.

6. 타기관·단체 등 토론문화사업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른 기관·단체의 각종 토론문화사업에 노하우와 인력, 운영규정 및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민주시민토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협업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토론전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6-8] 토론문화사업 지원 현황

대회명	주관	지원사항	행사일자
2017 소통과 공감의 제주시학생 토론마당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토론대회 자료, 상장 및 부상	5. 27.
제5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심사위원 및 토론시간관리시스템	7. 3.
제3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오산시	대회 추진단 위원 및 상장	7. 26.~7. 29.
제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경기도	토론자문단	9. 15.
2017년 동북아시아 국제토론대회	한국토론협회	상장 및 부상	11. 17.~11. 20.
2017 ACE+ 연합 토론대회	창원대학교	토론시간관리시스템	11. 3.
제6회 의왕시 학생 토론대회	의왕시	토론대회 특강	11. 4.
2017 대학생 통상 정책 토론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규정 자문 및 토론시간관리시스템	11. 18.
2017 경기 토론교육 페스티벌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	자료집 인쇄, 학생자치회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매뉴얼	12. 16.



제도개선

제7장 제도개선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토론회 개최 관련, 「전국대학생토론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전국고등학생토론회 운영규정」 제정하였음.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규격을 확대하고,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공표에 관한 특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기존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토론자는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기타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토론자가 토론회에서 도표, 그림 등 참고자료를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비교·검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어 토론자의 선거운동의 기회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자,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범위와 크기를 조정하여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또한, 당초 관리규정 제13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 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토론회

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30일까지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대통령선거 토론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음.

[표 7-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개정 현황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날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u>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정견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u>각급토론위원회가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u>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u>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u>)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에 있어 미비점은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음.

[표 7-2]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 개정 사항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 개정 사항
가. 운영위원회의 서면의결 사유 추가(안 제7조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 외에 긴급한 사항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회 규모 축소에 따른 참가신청·접수 방법의 변경(안 제12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참가신청 접수순위를 96개 팀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대기팀 상한 범위 지정 및 처리 순위, 예선대회 조 편성 방법 등을 조정함.
다. 검증단의 필요적 의견개진 의무 삭제(안 제15조제2항) 검증단이 토론논제에 대해 필요적으로 검증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것을 토론논제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라. 토론논제 선정 시 의무적 의견수렴 절차 완화(안 제16조제1항) 토론논제 선정 시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주관에 따른 시상 훈격의 조정(안 제34조제1항) 금상·은상·동상·장려상을 공동주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시상할 수 있도록 훈격을 조정함.

3.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

시·도별로 개최하던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로 확대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근거, 참가자격, 대회방식, 심사기준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음.

[표 7-3]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가. 예선과 본선의 분리 개최 등(안 제4조)

예선대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본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되 본선대회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와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양 대회의 심사위원장 등 겸임(안 제5조·제10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함께 개최할 경우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가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가 되고, 양 대회의 심사위원장·심사장·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부 록

제8장 부록

1. 201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 1.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남택용 부임
- 1. 11. 제1차 위원회의
- 1. 18.~1. 20. 2016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선거연수원)
- 2. 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운영
- 2. 14.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자문회의 개최
- 2. 16. 제2차 위원회의
- 3. 3. 전문위원 위촉(박희봉)
- 3. 10.~4. 1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개발 연구용역(한국정당학회)
- 3. 13. 제3차 위원회의
- 3. 17. 제4차 위원회의
- 3. 17.~3. 27.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조사 실시
- 3. 18.~4. 1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
- 3.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안상윤)
- 3. 22.~4. 2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 3. 31. 제5차 위원회의
- 4. 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 4. 7. 제6차 위원회의
- 4. 10.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KBS 스튜디오)**
- 4. 12.~5. 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모니터단 운영

4. 13.~6. 3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한국정치학회)
4. 14.	제7차 위원회의
4. 14.~4. 16.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인터뷰 제작(서울역, 용산역)
4. 15.~4. 16.	후보자등록기간
4. 17.	제8차 위원회의
4. 17.~5. 8.	선거운동기간
4. 19.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4. 21.	제9차 위원회의
4.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성한용)
4. 23.	제10차 위원회의
4. 2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1차, KBS 스튜디오)
4. 23.~5. 9.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이벤트 실시
4. 24.~5. 1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4. 24.	제11차 위원회의
4. 24.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외, KBS 스튜디오)
4. 25.~4. 30.	재외투표기간
4. 2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2차, MBC 스튜디오)
4. 30.	제12차 위원회의
5. 2.	제13차 위원회의
5. 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3차, MBC 스튜디오)
5. 4.~5. 5.	사전투표기간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일
5. 17.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개최(씨네큐브 광화문)
5. 25.~5. 26.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토론체험 프로그램 실시(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5. 27.	2017 소통과 공감의 제주시학생 토론마당 지원(제주 남광초, 서귀포학생문화원)
6. 1.	제14차 위원회의
6. 7.~6. 9.	토론전문가양성 기초과정 운영 지원(선거연수원)
6. 13.~7. 3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언론보도 분석 연구(미디어전략연구소)
6. 2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위원워크숍 개최
7. 3.	제5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지원(서울올림픽파크텔)
7. 1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한국프레스센터)
7. 26.~7. 29.	제3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지원(오산 한신대학교)

- 8. 3.~8. 4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예·본선)·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본선) 개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 8. 8. 2017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선거연수원)
- 8. 30. 제15차 위원회의
- 9. 15. 제16차 위원회의
- 9. 15. 제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지원(경기 스타트업캠퍼스)
- 9. 17. 전문위원 위촉(이영배, 조성남, 지성우)
- 9. 20. 제17차 위원회의
- 9. 25. 제18차 위원회의
- 9. 27. 제19차 위원회의
- 9. 2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무산)**
- 11. 2. 전문위원 위촉(태양식)
- 11. 3. 2017 ACE+ 연합토론대회 지원(창원대학교)
- 11. 4. 제6회 의왕시학생토론대회 지원(의왕글로벌인재센터)
- 11. 8. 2017 대학생통상정책토론회 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
- 11. 17.~11. 20. 2017 동북아시아 국제토론대회 지원(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 11. 21. 제20차 위원회의
- 11.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권영준)
- 11.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서정건)
- 12. 1. 제21차 위원회의
- 12. 8. 제22차 위원회의
- 12. 1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MBC 스튜디오)**
- 12. 12.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MBC 스튜디오)**
- 12. 16. 2017 경기 토론교육 페스티벌 후원(비산중학교)
- 12. 21. 제23차 위원회의

2018년

- 1.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규 부임

2. 2017 토론회 토론진행표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1) 초청 1차

- 일시·장소 : 2017. 4. 23.(일) 20:00~22:00(120분 생방송), KBS TS-4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등 동시 생중계
- 후보자(자리순) :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심상정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 후보자 소개 및 인사	2분	20:02:00	MC/ S/T	김진석 (KBS 기자)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0:03:00	VCR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8분	1분	20:04:00		
5 5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논점 : 미중일 외교정책/ 통일, 북핵 등 대북정책 ☞ 사회자 '국민질문'(1분) ⇒ 유승민/안철수/홍준표/문재인/심상정 후보자 답변 후 유승민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 사회자 Bridge	53분 (46분)	20:57:00	MC/ S/T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6	사회자 공동질문 후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주제2 :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 논점 :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선거제도, 개헌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안철수/홍준표/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자 답변 후 안철수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53분 (45분 30초)	21:50:00	수어 MIX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홍준표/문재인/심상정/유승민/ 안철수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21:56:00		※ 자리순 (사전추첨)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1:57:20	VCR	

(2) 초청 2차

- 일시·장소 : 2017. 4. 28.(금) 20:00~22:00(120분 생방송), 장소 : MBC C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등 동시 생중계
- 후보자(좌석순)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 후보자 소개 및 인사	1분30초	20:01:30	MC/ S/T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0:02:30	VCR	
4	진행방식	• 진행방식 소개	1분	20:03:30		
5	정책검증 토론	[주제: 각 후보자의 경제분야 주요 정책]				
		문재인 • 문재인 후보 정책발표(3분) – 심상정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유승민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안철수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홍준표 / 문재인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0:25:00 20:25:00	MC/ S/T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 심상정 후보 정책발표(3분) – 유승민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안철수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홍준표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문재인 / 심상정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0:46:30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 유승민 후보 정책발표(3분) – 안철수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홍준표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문재인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심상정 / 유승민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1:08:00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 안철수 후보 정책발표(3분) – 홍준표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문재인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심상정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유승민 / 안철수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1:29:30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 홍준표 후보 정책발표(3분) – 문재인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심상정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유승민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 안철수 / 홍준표 1:1 자유토론(각 2분 총량)	21분30초 (19분)	21:51:00	수어 MIX	홍준표 (자유한국당)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심상정/유승민/안철수/홍준표/문재인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21:57:00		※ 좌석순 (사전 추천)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8:00	S/T F.S	위원 등 소개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1:58:20	VCR	(자막)

(3) 초청 3차

- 일시·장소 : 2017. 5. 2.(화) 20:00~22:00(120분 생방송), MBC C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등 동시 생중계
- 후보자(자리순) :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 후보자 소개 및 인사	2분	20:02:00	MC/ S/T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0:03:00	VCR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8분	1분	20:04:00	MC/ S/T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 자리순 (사전 추천)
5	사회자 공동질문	[주제1: 복지·교육 정책] • <복지>저출산·고령화/사회적 약자/정책의 지속가능성/ 연금·보험/의료·환경 등 • <교육>공교육 정상화 방안/사교육 문제/ 학제개편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문재인/홍준표/유승민/심상정/안철수 후보자 답변 후 문재인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 사회자 Bridge	53분 (45분 30초)	20:57:00		
5	후 자유토론 I					
6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주제2 : 국민통합 방안] • 국민과의 소통/인사편중/사회갈등 해소/국가 미래비전 등 ☞ 사회자 '국민질문'(1분) ⇒ 홍준표/유승민/심상정/안철수/문재인 후보자 답변 후 홍준표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9분 정도	53분 (46분)	21:50:00	수어 MIX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유승민/심상정/안철수/문재인/홍준 표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21:56:00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1:57:20	VCR	

(4) 초청외

- 일시·장소 : 2017. 4. 24.(월) 23:00~4.25.(화) 01:00(120분 생방송), KBS TS-4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동시 생중계
- 후보자(자리순) : 오영국, 장성민, 조원진, 이경희, 김선동, 남재준, 이재오, 김민찬, 윤홍식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3: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2분	23:02:00	MC/ S/T	백운기 (KBS 앵커)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영상	1분	23:03:00	VCR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0분	1분	23:04:00	MC/ S/T	오영국 (경제애국당)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조원진 (새누리당) 이경희 (한국국민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남재준 (통일한국당)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김민찬 (무소속) 윤홍식 (홍익당) ※ 좌석순 (사전 추천) -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II) 후보 사퇴
5	기조연설	• 오영국/장성민/조원진/이경희/김선 동/남재준/이재오/김민찬/윤홍식 후 보자(약 2분 정도)	20분 (18분)	23:24:00		
6	사회자 공 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정치·외교 분야] • 논점 :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장성민/조원진/이경희/ 김선동/남재준/이재오/김민찬/윤홍식/오영국 후보자 답변 후 장성민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4분 정도 ☞ 사회자 Bridge	41분 (36분 30초)	24:05:00		
7	사회자 공 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 사회자 Bridge [주제2 : 경제·사회 분야] • 논점 : 경제활성화/ 복지·교육 정책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조원진/이경희/김선동/ 남재준/이재오/김민찬/윤홍식/오영국/장성민 후보자 답변 후 조원진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후보당 약 4분 정도	41분 (36분 30초)	25:46:00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경희/김선동/남재준/이재오/김민 찬/윤홍식/오영국/장성민/조원진 후보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10분 (9분)	25:56:00	수어 MIX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5:57:00	S/T F.S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20초	25:57:20	VCR	위원 등 소개 (자막)

2)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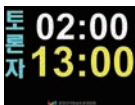
- 일시·장소 : 2017. 4. 10.(월) 10:00~12:00(120분 생방송), KBS TS-4 스튜디오
- 중계방송 : KBS, MBC, SBS 및 국회방송 등 동시 생중계
- 토론자(좌석순) : 김세연(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김종석(자유한국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0:01:30	MC/ S/T	백운기 (KBS 앵커)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8분	1분	10:02:30	MC/ S/T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
4	기조연설	[국정운영 방안 등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입장] ☞ 김세연/이정미/김종석/홍익표/ 김성식 토론자(각 2분 정도) 	12분 (약10분)	10:14:30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 논점 : 사드를 둘러싼 미중일 외교관계, 대북정책 등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이정미/김종석/홍익표/ 김성식/김세연 토론자 답변 후 김종석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8분 정도 ☞ 사회자 Bridge	47분 (40분30초)	11:01:30		김종석 〈자유한국당 (전)여의도 연구원장〉
6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주제2 : 경제 활성화] • 논점 : 가계부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각 당의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홍익표/김성식/김세연/ 이정미/김종석 토론자 답변 후 김성식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8분 정도 ☞ 사회자 Bridge	47분 (40분30초)	11:48:30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김세연/이정미/김종석/홍익표/ 김성식 토론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5분)	11:54:30	수어 MIX	김성식 〈국민의당 수권비전 위원장〉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30초	11:56:00	S/T F,S	※ 좌석순 (사전 추천)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10	VCR	위원 등 소개 (자막)

3) 정당정책토론회

(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 2017. 12. 11.(월) 10:00~12:00(120분 생방송), MBC A 스튜디오
- 중계방송 : MBC, KBS, 국회방송 등 동시 생중계
- 토론자(좌석순) : 김종훈(민중당)/ 하태경(바른정당)/ 조원진(대한애국당)/ 이태규(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정태옥(자유한국당)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MC/ S/T	성경섭 (건국대 교수)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3분	1분	10:02:00	MC/ S/T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최고위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평화본부장)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좌석순 (사전 추천)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김종훈/하태경/조원진/ 이태규/김영진/김종대/정태옥 토론자 답변 후 김종훈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 설명 : 토론자당 약 6분30초 정도 ☞ 사회자 Bridge 	53분 (46분)	10:55:00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주제2: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하태경/조원진/이태규/ 김영진/김종대/정태옥/김종훈 토론자 답변 후 하태경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6분30초 정도 ☞ 사회자 Bridge	53분 (46분)	11:48:00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조원진/이태규/김영진/김종대/ 정태옥/김종훈/ 하태경 토론자 (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8분 (7분)	11:56:00	수어 MIX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10	VCR	

(2)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 2017. 12. 12.(화) 10:00~12:00(120분 생방송), MBC A 스튜디오
- 중계방송 : MBC, KBS, 국회방송 등 동시 생중계
- 토론자(좌석순) : 김용신(정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이용호(국민의당)/ 조원진(대한애국당)/ 정태홍(민중당)/ 정유섭(자유한국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항목	내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0:01:30	MC/ S/T	오미영 (가천대 교수)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13분	1분30초	10:03:00	MC/ S/T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4	사회자 공동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사회 안전 대책]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김용신/김세연/이용호/ 조원진/정태홍/정유섭/홍익표 토론자 답변 후 김용신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 설명 : 토론자당 약 6분30초 정도 ☞ 사회자 Bridge	52분 (46분)	10:55:00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최고위원)
5	사회자 공동질문 후 자유토론 II	[주제2: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김세연/이용호/조원진/ 정태홍/정유섭/홍익표/김용신 토론자 답변 후 김세연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6분30초 정도 ☞ 사회자 Bridge	52분 (46분)	11:47:00		정태홍 (민중당 정책위의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 위원장)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용호/조원진/정태홍/정유섭/ 홍익표/김용신/김세연 토론자 (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8분 (7분)	11:55:00		수어 MIX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30초	11:56:3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40	VCR	

3.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 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중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④ (생략)

⑤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개정 2017.2.24.>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7.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5항· 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	------------------------------	-----	---------------

【 정당법 】

[시행 2016. 4. 16.] [법률 제13757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 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 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5호, 2018. 1.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2018. 1. 19.>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키획팀, 방송토론팀, 토론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8.1.19.>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2018.1.19.>
-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19.>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11.25., 2018.1.19.>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지도홍보과장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도홍보과장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③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1.19.]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작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

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 1. 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훈령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안 등의 통지는 서면(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의안) ① 의안은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의결사항

규칙 제5조에 따른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와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초청후보자 선정, 사회자 선정,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토론진행방식 결정, 그 밖에 해당 토론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2. 보고사항

가. 법령 및 각종 사무편람·지침 등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사무국(간사장을 포함한다)에 보고를 요청한 사항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다. 토론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등 위원들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② 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안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안을 상정(上程)한다. 다만, 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안처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때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개최, 의안처리결과 공표 또는 정회(停會), 산회(散會), 휴회(休會), 폐회(閉會)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 또는 검토를 위해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면의결)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써 심사·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 의결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간사장 및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결석위원, 배석자
3. 상정(上程) 의안
4. 의안별 공개·비공개 결정사항
5.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6. 개회·폐회시간, 산회(散會)·정회(停會)·휴회(休會)·개의(開議)시간 등

③ 회의록의 간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녹음 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발언내용의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속기할 수 있다.

② 녹음 또는 속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록의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수정(修正)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토론위원회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보존 등) ① 회의록은 각급토론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이 있는 경우 그 회의록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빨간색으로 **비공개**라고 표시한다.

③ 회의록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및 보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해당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명단, 발언내용에 관한 해당 발언자의 직책 및 이름, 발언내용 중에 기재된 위원 기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

[개정 2018.1.1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옷·여객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정견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각급토론위원회가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초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

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등 공개)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회의 일시, 장소, 의안(이하 "일정등"이라 한다)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4.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각급토론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의안의 전부 또는 각 의안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방청) ①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일정등을 공개할 때에 방청의 허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가된 의안에 대해서만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서 의안의 심사·의결이 종료되면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한다)을 제출하고, 개회(開會) 전까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⑥ 각급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방청인이 위원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제5조(방청석 설비) 각급토론위원회는 방청인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석을 마련하되,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청의 제한) ① 위원장은 무기·흉기·폭발물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방청인은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녹음 등 허가) ①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청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위원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위원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기 위하여 녹음기, 캠코더, 카메라, 방송장비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어깨띠, 윗옷(上衣), 표찰(標札), 손팻말(手旗),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장명령)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방청이 허가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방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2017. 6. 29. 중앙토론위예규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주권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시민토론 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9.>

제2조(명칭) 대회의 명칭은 “전국대학생토론대회”라 한다. <개정 2017. 6. 29.>

제3조(주최 및 주관) 중앙토론위원회는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학회 및 대학교 등과 공동주관할 수 있다.

제4조(개최시기 등) 개최시기·장소, 기간 및 일정 등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조직)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에 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9.>

②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내부

가.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팀장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장

다.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신설 2016. 7. 26.>

2. 외부

가. 학회장이 추천하는 학회 임원과 심사위원장 <개정 2016. 7. 26.>

나. 대학교 대외협력 부서장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7. 26.>

④ 임기는 매년 대회 결선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 보조 및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중앙토론위원회와 학회 및 대학교 등 공동주관하는 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명을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간사를 수석간사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토론논제와 경기방식 및 규칙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6.>
- ② 운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제7조(운영)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대회 업무 관련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③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6. 7. 26.>

제8조(자문위원)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학회 및 대학교 등 소속 직원 중에서 약 간 명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위원·간사 및 자문위원에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목개정 2017. 6. 29.]

제10조(사무분장) 운영위원회 내에 대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대회 관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3장 참가자격 및 신청

제11조(자격 등) ① 대회는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9.>

1.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국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재외국민과 그 자녀에 한하며, 휴학생을 포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9.>

1. 역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7. 6. 29.>
2.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3.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회에 불참한 사람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람

제12조(참가신청과 접수) ① 대회의 참가신청은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등록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되, 참가신청서와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 ② 참가신청은 접수순위에 따라 96개 팀까지로 한다. <개정 2017. 6. 29.>
- ③ 참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접수순위는 등록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⑤ 제13조에 따라 신청 철회 및 불참 팀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20개 팀에 이를 때까지 접수하되, 접수순위 97순위부터는 대기팀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기팀의 효력은 대회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6. 29.>
- ⑥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며, 동일 학교 학생 또는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할 수 있다.
- ⑦ 팀원 교체는 부득이한 경우, 참가신청 등록완료 후 1회에 한하여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3조(신청 보완 및 불참) ① 참가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직접 보완할 수 있으며, 중앙토론위원회가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참가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 ② 제11조의 참가자격 및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중앙토론위원회가 이를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함에도 참가신청자가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7. 26>
- ③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팀은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불참사실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불참(대회개시일 등록마감시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연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개정 2016. 7. 26>

제4장 대회 논제

제14조(논제 공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논제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 ② 논제는 정치, 선거와 관련된 사항 및 대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내용 등으로 한다.

제15조(검증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과 역대 대회 수상자 중에서 약간 명의 검증단을 둘 수 있다.

- ② 검증단은 논제의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 ③ 검증단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외부 검증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논제 선정등) 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 ② 예선과 본선에 대한 논제를 각각 선정할 수 있으며, 결선의 경우에는 예선과 본선 논제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논제는 대회개시일전 2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대회 방식

제17조(조 편성 및 대진표 작성) ① 예선대회의 조 편성은 3개 팀 1개 조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참가신청 팀 수에 미달하거나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에는 2개 팀 1개 조로 편성하여 대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17. 6. 29.>

② 조 편성은 무작위로 정하되, 동일 대학교 소속의 팀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한다. <신설 2016. 7. 26>

제18조(경기방식, 규칙 등의 결정) ① 대회의 경기방식과 규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6. 29.>

② 대회는 예선과 본선 및 결선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2팀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논제에 대하여 한 팀은 찬성 의견, 다른 팀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 6. 29.>

③ 예선은 조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선은 64개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9조(예선 및 본선) ① 경기진행방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1회의 총 경기시간은 15분 이상 20분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26>

1. 찬성팀 기조연설(1분)

2. 반대팀 기조연설(1분)

3. 찬성팀과 반대팀 간 자유토론(예선은 각 6분, 본선은 각 8분) <개정 2016. 7. 26>

4. 반대팀 맺음말(1분)

5. 찬성팀 맺음말(1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간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③ 심사위원별 결과에서 승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예선대회에 있어서는 각 조의 다승순 1, 2위팀이 본선에 진출하되, 승수가 같은 경우 승자승, 득점(각 팀이 얻은 총 점수)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9.>

제20조(결선) ① 결선은 4강에 진출한 4개 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1회의 총 경기시간, 경기 진행방식과 시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이 경우 결선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③ 결선에는 사회자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사회자는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제21조(경기규칙) ① 찬성팀과 반대팀은 각 경기에 앞서 팀별로 찬성과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정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17. 6. 29.>

② 참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자료는 찬성과 반대 자료를 포함하여 팀당 A4용지 규격 범위 내에서 10장 이하로 하며,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결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유토론의 경우 반대팀부터 발언하며, 팀당 1회 발언시간은 2분을 넘지 못한다.

④ 전체 토론시간은 각 팀의 팀원마다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⑤ 참가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참가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팀원이 아닌 사람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사소통하는 행위 <개정 2017. 6. 29.>
2. 무례한 동작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3. 심사위원에게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⑦ 참가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점 범위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제22조(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 ①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은 자유토론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손을 드는 등 발언자를 향하여 적절한 동작을 취한다.
2. “질문있습니다” 등의 말로 주의를 끈다.

②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답해야 한다.

1. 답변을 거부하는 분명한 몸짓이나 손짓을 한다.
2. 거부 의사를 구두로 밝힌다.
3. “잠시 기다립시오” 등과 같은 말로 잠시 보류한 후 수용한다.

③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답변을 거부당한 후에는 다시 질문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답변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는 질문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 팀의 발언시간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 7. 26>

⑤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질문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 중 최소 2회의 질문 제기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23조(발언시간관리시스템) ① 참가자의 발언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대회장에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은 노트북과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모니터에는 팀별 총 발언시간과 잔여시간이 표시된다.

③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각 경기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대회의 심사

제24조(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를 심사한다. <개정 2016. 7. 26>

1.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2. 내용 구성력, 창의력과 순발력, 이해력과 대응력 및 일관성
3. 전달력
4. 토론태도와 협동성
5. 제21조(경기규칙)제7항에 따른 감점기준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심사표]에 의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 및 관련 업무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는 외부 심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회는 경기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장은 외부 심사위원 중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 6. 29.>
- ③ 결선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두되, 대회 심사위원장,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회의원, 변호사 기타 토론 전문가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26>
- ④ 심사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 ⑤ 모든 심사위원은 대회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17. 6. 29.>

제26조(심사위원장, 심사장) ① 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

- 7. 26>
- 1. 심사위원 자격 판단
- 2.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토론 심사 능력 평가
- 3. 대회 시작 전 심사위원 교육
- 4. 기타 대회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
- ②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26>
- 1. 경기진행 및 결과 기록 관리 등
- 2. 각 경기별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승패의 결정
- 3. 경기 진행 중에 제기된 이의 처리
- 4. 제30조(참가자 수칙)제1항의 위반사항 적발 시 처리

제27조(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은 [별표] 심사표에 따라 보조자료([별지2] 토론흐름표)를 작성하여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 1. 객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의 개인적 신념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 ② 모든 심사위원은 종교,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선호도, 나이, 사회적 지위, 어투, 모든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된다.
- ③ 심사결과는 비공개하며, 다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심사결과 등 기타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개정 2016. 7. 26>
- 1.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2. 성원, 야유를 하는 경우
- 3. 팀원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 4. 발언 중인 참가자와 대화하는 경우
- 5.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 경우
- 6. 다른 심사위원의 주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이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6. 7. 26>
- ⑤ 해당 경기 전까지의 누적 심사 점수나 승리 전적은 해당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심사위원에게 심사 결과나 토론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⑥ 팀원 중 한 명이 특정 경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제28조(심사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경기 방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본인 경기에 한하여 다음 경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 또는 해당 경기의 심사장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제1항에 대한 이의 제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처리하며, 이를 접수한 대회운영본부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참가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중앙토론위원회는 홈페이지 또는 대회 안내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장 대회 진행

제29조(대회운영본부) ① 운영위원회는 대회 중에 대회운영본부를 둔다.

② 대회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선, 본선, 결선 대회의 대진표 결정
2. 경기장별 심사위원 배정
3. 심사결과의 정리
4. 각종 이의제기의 처리

③ 대회운영본부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대회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참가자 수칙) ① 모든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금지된 참고자료를 토론장에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17. 6. 29.>
3. 토론 경기 진행 중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5. 팀원 중 한 명 또는 전원이 특정 경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17. 6. 29.>

② 심사위원 또는 운영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팀을 실격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명 없이 실격처리한다. <개정 2016. 7. 26., 2017. 6. 29.>

③ 제2항에 따라 실격패로 처리하는 경우의 점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배한 팀은 각 구성원이 최하점을 받는다.
2. 승리한 팀은 예선대회의 모든 토론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점을 받는다. <개정 2017. 6. 29.>
3. 점수는 대회가 모두 끝난 후 합산된다.

제31조(참관자 수칙) ①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 장치는 대회운영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

②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대회운영본부에 도착하여 관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9.>
2. 대회장에 정숙하게 입장하고 질서있게 착석한다. <개정 2017. 6. 29.>
3. 참가자를 소개할 때와 각 경기가 종료했을 때만 박수를 친다.

③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회장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대회장에 늦게 입장하거나 일찍 퇴장하는 행위
3. 토론이 진행중일때 대회장에서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질문하는 행위
- 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제3항에 해당하여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참관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이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32조(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다른 참가자가 참가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제기는 반드시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을 통해 대회운영본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6>

1. 모든 형태의 폭력 또는 위협
2. 성희롱
3. 스토킹 또는 신체적 희롱
4.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불법 약물의 공급이나 소비
5.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가자
6. 대회 참가자와 그 밖의 대회 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개정 2017. 6. 29.>
7. 대회장소 내 사유재산이나 공공 시설물의 의도적인 훼손
- ② 대회운영본부는 제1항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1. 이의제기 대상자의 참가자격 박탈 또는 정지 결정 <개정 2016. 7. 26., 2017. 6. 29.>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통지

제8장 시 상

제33조(시상) ① 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1. 단체상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개인상 : 스피커상
3. 특별상
- ② 단체상 및 개인상, 특별상의 표창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훈격) ① 대회의 시상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29.>

1.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공동주관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7. 6. 29.>
3. 스피커상 : 주관학회의 장
4. 특별상 : 후원기관·단체의 장
- ② 시상훈격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상금의 지급) 제33조의 시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은 500만원 이하
2. 금상은 300만원 이하
3. 은상은 200만원 이하
4. 동상은 100만원 이하

5. 장려상은 50만원 이하

6. 특별상은 50만원 미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그 상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한다.

부칙 <2017. 6. 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심 사 표

예선	제()조, 제()심사반		본선	64강, 32강, 16강, 8강	결선	준결승, 결승
찬 성				반 대		
팀 명						팀 명
성 명						성 명
평가 영역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 (배점)
/10	기조 연설	•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기조 연설 /10
/40	자유 토론	• 논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가?(내용 구성력)				자유 토론 /40
		• 상대논리의 약점/모순점을 찾아낸 질문인가?(창의력, 순발력)				
		•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는가?(이해력, 대응력)				
		•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가?(일관성)				
/10	맺음말	• 주장을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였는가?				맺음말 /10
/20	전달력	•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메타포 등 사용 여부, 어휘, 문장구사력)				전달력 /20
		• 음성 전달은 적절하였는가?(빠르기, 크기, 고저, 강조, 어조)				
/20	토론 태도 팀워크	• 자세와 태도는 적절하며 토론 예절을 잘 지켰는가? (말꼬리 잡기 여부, 토론 자세 등)				토론 태도 팀워크 /20
		• 협력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는가?				
	감점	규정 제21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5점범위내)				감점
총 점	찬성팀 심사의견			반대팀 심사의견		총 점
	○ ○			○ ○		
심사위원 성명 : 서명 :						

※ [별지2] 토론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감점 시 심사의견란에 감점사유를 반드시 기재

[별지1]

제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 신청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접수번호	20 -		참가신청서			
팀 명	[6자 이내(7자 이상은 약칭)로 기재하되, 지역명·대학명칭은 사용 불가]					
사 진 1 (이미지 파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		학과	학년	
사 진 2 (이미지 파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		학과	학년	

숙박여부	2인 숙박	1인만 숙박(이름 기재)	2인 비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대회 운영 관련 통지 등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참가 확인 등을 위한 기간(1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참가자1 서명 : 동의 ☐ 미동의 ☐ 참가자2 서명 :			

[별지2]

토 론 하 림 표

구 분	찬 성	반 대
팀 명		
기조연설		
자유토론		
맺음말		
비 고		

[별지3]

제 호

상 장

○○○^①

○○○^②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③와 공동주관한 제 ○^④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⑤

○○○^⑥ ○○○^⑦

주 : ① 상장명 ② 소속 및 성명 ③ 공동주관하는 기관명 ④ 제호 ⑤ 시상기관명
⑥ 시상기관의 장의 직위 ⑦ 시상기관의 장 성명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 2017. 6. 29. 중앙토론위예규 제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론을 활성화하고, 고등학생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주권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대회의 명칭은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라 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중앙토론위원회는 매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학회 및 대학교 등과 공동주관할 수 있다.

제4조(개최시기 등) ① 예선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토론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고, 그 개최시기·장소, 기간 및 일정, 경기방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토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② 본선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정한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본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에 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선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함께 개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된다.

제3장 참가 신청

제6조(참가신청과 접수) ① 본선 참가대상은 시·도별 예선 결과 선발된 각 2팀으로 한다.

② 본선 참가신청은 해당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출한 시·도별 예선 결과보고로 같음한다.

③ 팀은 동일 학교 소속 2명의 학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불참) ①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팀은 그 사실을 대회개시일전 3일까지 해당 시·도토론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참자의 대회 참가제한에 관하여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대회 논제

제8조(논제 공모 및 선정 등)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논제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논제 공모와 선정에 관하여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생”은 “고등학생”으로 본다.

제5장 대회 방식·심사·진행

제9조(경기방식, 규칙 등의 결정) ① 본선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본선 4강 토너먼트부터는 사회자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사회자는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방식과 규칙 등의 결정에 관하여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0조(본선 심사위원장등의 겸임) 본선의 심사위원장, 심사장,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장등”이라 한다)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심사위원장등이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의 준용) 전국고등학교토론대회 본선에 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19조제1항부터 3항까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선과 본선”은 “본선”으로 본다.

제6장 시 상

제12조(시상) ① 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상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상
2. 개인상 : 스피커상

② 단체상 및 개인상 상장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3조(훈격) ① 대회의 시상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상, 스피커상 :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공동주관 기관·단체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상훈격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상금의 지급) 제12조의 시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대상은 100만 원 이하
2. 금상은 80만 원 이하
3. 은상은 50만 원 이하
4. 동상은 30만 원 이하
5. 장려상은 20만 원 이하
6. 참가상 및 스피커상은 10만 원 이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그 상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론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대회에 관하여 중앙토론위원회 및 시·도토론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 예규 시행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별지4]

제 호

상 장

○○○^①○○○^②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③와 공동주관한 제 ○^④회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⑤○○○^⑥ ○○○^⑦

주 : ① 상장명 ② 소속 및 성명 ③ 공동주관하는 기관명 ④ 제호 ⑤ 시상기관명
⑥ 시상기관의 장의 직위 ⑦ 시상기관의 장 성명

2017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인 쇄 | 2018년 2월

발 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Tel. (02) 3473-9947

디자인 · 인쇄 | 렛츠디자인 (02) 2268-8658
